#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연월일: 2024. 12. 의 안 6920 번 호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	심사경과
2200919	엄태영의원	2024.6.25.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 1소위원회에 회부
2200935	신영대의원	2024.6.25.	
2201213	김한규의원	2024.7.1.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 (2024.09.25.)
2201342	정준호의원	2024.7.3.	
2201503	김용만의원	2024.7.8.	
2201871	주호영의원	2024.7.17.	
2202726	서영교의원	2024.8.12.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24.11.1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
2203306	박수민의원	2024.8.28.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회부 (2024.11.12.)

-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4.11.25.)에서 위 8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정무위원회(2024.12.03.)는 위 8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 한도는 2001 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 및 예금등의 규모 가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예금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예금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 려는 것임(안 제32조제2항). 법률 제 호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조제8호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생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	②
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	
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u>대</u>	<u>1</u>
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	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
도로 한다.	령으로 정하는 금액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